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주사회의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수 신 각 언론사 경제부·정치부·사회부

발 신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담당 : 이연주 민생경제팀 간사 010-3933-4581 min@pspd.org)

제 목 [보도자료] 자영업자·소비자 선택권 침해하고 독점 강화하는 ‘배민온리’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날 짜 2026. 02. 24. (총 6 쪽)

보 도 자 료

자영업자·소비자 선택권 침해하고 독점 강화하는 ‘배민온리’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일시 장소 : 2. 24. (화) 10:00,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1. 오늘(2/24)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는 최근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이 체결한 ‘배민온리’ 계약에 대해 공정거래법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계약은 지난 1/28,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처갓집양념치킨 운영사)가 체결한 전략적 협업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로, 핵심 내용은 처갓집양념치킨이 배민에 단독입점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 동안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배민온리’ 계약이 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주, 배달의민족 입점업체, 나아가 소비자 선택권 박탈이라는 불이익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공정경쟁질서를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 공정위 신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2. 이번 ‘배민온리’에 대한 공정위 신고는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위반 두 개의 혐의로 이뤄졌습니다.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담당한 박현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달의민족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처갓집양념치킨에 중개수수료를 기존 7.8%에서 3.5%로 일시적 인하하는 조건으로 배민에만 단독 입점하도록 하는 제한하는 것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배달 매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에게 배민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점주의 수익창출 다각화 기회를 박탈하여 점주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박현용 변호사는 ‘배민온리’ 계약이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배타조건부거래행위), 동법

제45조 제1항 제3호(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제6호(거래상지위남용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며 공정경쟁 질서를 위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3.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담당한 김대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배달의민족 시장점유율이 57.6% 수준으로, 과거 80~90%의 독점에 가까운 점유율이 완화되었는데도, 배민에만 입점하도록 강제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가맹점주에게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이번 계약서 내용에 따라 ‘배민온리’에 입점하지 않은 가맹사업자는 “6,000원 즉시 할인” 행사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프랜차이즈 업체 간 경쟁에서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처갓집양념치킨 내 행사에 참여하는 가맹사업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심화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김대운 변호사는 ‘배민온리’ 계약이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구속조건부거래), 제12조 제1항 제3호(거래상지위 남용), 제12조의4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4. 배달의민족은 이번 ‘배민온리’ 계약에 대해 “가맹점주들의 자발적 참여에 기반해 수수료 부담 완화와 할인 프로모션을 지원하여 가맹점주의 매출, 이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가맹점주는 참여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다”는 배민의 설명에 대해 “프로모션에 참여하지 않으면 무조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가맹점주의 자발적 참여는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은 가맹본사로부터의 과도한 납품단가 부담에 배달수수료 부담까지 이중으로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본사는 배달앱 종속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번 처갓집양념치킨 사례가 다른 프랜차이즈 업계로 확장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으며, 결국 가맹점주들의 배달앱 의존도가 높아져 그 부담이 과중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5. 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는 앞서 배민과 교촌치킨의 ‘배민온리’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9/18, 배달의민족이 ‘한그릇 무료배달’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소수 대형 프랜차이즈에 대해 할인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게 하고, 앱 상에서의 노출을 일반 자영업자와 달리 적용하는 등 일반 입점업체와 차별취급한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배민은 지속적으로 소수 대형 프랜차이즈를 우대취급하는 구조를 고착화하며 일반 자영업자에게 플랫폼의 경쟁비용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상생요금제 이후부터 자영업자들이 배달비 부담을 호소한지 수년이 지났는데, 배민은 거대 프랜차이즈만 우대하고 일반 영세자영업자의 상생요구는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기만하는 ‘배민온리’ 정책을 폐지하고 진정한 업주와의 상생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6. 이날 참석자들은 배민의 불공정행위를 규탄하는 한편, 과도한 중개수수료 비용을 인하여 입점업체와의 상생을 도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은 공정위가 이번 ‘배민온리’ 계약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어 구조적 차별로 안착되지 않도록 신고형의를 철저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배달앱 시장 내 공정경쟁 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

▣ 불임1 : 기자회견 개요

▣ 불임2 : 신고서 개요

▣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 불임1 : 기자회견 개요

- 점주·소비자 선택권 침해하고 독점 강화하는 ‘배민온리’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6. 02. 24. 화 10:00 /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 주최 :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참여연대
- 발언 순서
 - 사회 : 이연주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 발언1 :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서 개요 및 내용 / 박현용 참여연대 실행위원
 - 발언2 :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서 개요 및 내용 / 김대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 발언3 : 프랜차이즈 본사 계약에 따른 가맹점주의 선택권 제약 문제 / 김진우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
 - 발언4 : 비프랜차이즈 입점업체 부당차별 규탄 /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
- 문의 :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02-723-5303

▣ 붙임2 : 신고서 개요

1)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 신고인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백미순, 진영종, 한상희)
- 신고대리인 :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재희, 박정만)
법무법인 케이앤비 (담당변호사 박현용)
- 피신고인 : 주식회사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김범석)
- 신고명 :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남용, 불공정거래행위금지 위반

2) 관련 법리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5조 제1항 제5호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 금지)

- 제5조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2호
- 제9조 ⑤ 법 제5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로 한다

2.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이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그 거래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문제점

- 배민이 처갓집 사례를 기점으로 주요 프랜차이즈들에 대한 배타적 협약을 확대할 경우, 경쟁 플랫폼들은 소비자를 유인할 수단을 상실함. 이러한 과정이 지속되면 결국 배민으로 이용자가 급격히 쏠리는 현상이 가속화되어 배민의 독점적 지위가 더욱 공고해짐.
- 이러한 독점화는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플랫폼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경직성을 초래함.
- 나아가 배민의 독점적 지위가 현재보다 공고해질 경우, 사업자 및 이용자에 대한 거래조건이 악화될 수 있음. 현재 배민이 계약상 제시한 ‘수수료 3.5%로 인하’는 경쟁사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한 일시적인 유인책에 불과함. 배민에 대한 종속성을 강화한 이후에는, 독점적 지위를 악용하여 수수료를 기습 인상하거나 광고비 지출을 강제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배민온리’와 같은 배타적 정책이 지속되어 시장 내 경쟁이 실종될 경우, 배민은 독점 이윤을 향유하는 반면, 그로 인한 비용과 손해는 최종 소비자와 영세 가맹점주에게 전가되어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을 저하하는 결과를 낳을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3호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부당하게 경쟁사를 배제하는 행위
-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문제점
- 배민은 2024.말 기준 카드결제 점유율 57.6%를 차지하는 시장1위 사업자임. 또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 매출의 약 48.8%가 배달 플랫폼에서 발생하고 있어, 가맹점주들은 배민을 이용하지 않고는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제적 종속성을 띠고 있음.
- 배민은 이러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맹점주로 하여금 특정 플랫폼 이용 중단을 강요하여 다양한 배달앱을 이용해 수익을 극대화할 권리를 박탈함. 이는 점주들의 판매경로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영간섭에 해당함.
- 또한 배민은 점주들이 ‘배민온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브랜드권 노출 제외, 각종 할인 프로모션 배제 등 매출에 타격을 주는 등 불이익을 부과함. 이에 따라 점주들은 ‘배민온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음.

3) 가맹사업법 위반 신고

- 신고인 : 참여연대 (공동대표 백미순, 진영종, 한상희)
- 신고인대리인 : 법무법인 다산 (담당변호사 김대윤)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김재희, 박정만)
법무법인 케이앤비 (담당변호사 박현용)
- 피신고인 : 주식회사 한국일오삼 (대표이사 신동욱, 김강홍)
- 신고명 : 구속조건부 거래 위반 등

4) 관련법리

(1)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구속조건부 거래) 위반 행위

- 제12조 제1항 제2호 (구속조건부 거래) 가맹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문제점

- 가맹사업자가 가맹점주에게 배민만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 볼 수 있음. 해당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 쿠폰을 적용하지 않아 배민 내 다른 처갓집 양념치킨 가맹점과의 경쟁에서 열위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시장지배력이 상당한 배민 내부 경쟁을 제한하여 거래를 강제하는 객관적인 상황이 만들어진 것임.
- 또한 현대 이커머스 환경에서 멀티호밍(multi-homing)은 사업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경제적 권리로, 여러 판매 채널을 다각화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플랫폼 종속을 피하기 위한 사업전략임.
- 배민과 처갓집양념치킨의 제휴기간이 2026.2.9. ~ 2026.5.8.까지로 제한되어있긴 하지만, 향후 배달의민족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종속적 거래 관계로 발전했을 때, 배민이 중개료 인상시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함. 이같은 멀티호밍 제한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규제하는 행위임.

(2)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3호(거래상 지위 남용) 위반 행위

-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불공정거래행위유형 별표2 제3호 나목 : “부당한 강요 :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거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다목 : “부당한 계약조항의 설정 또는 변경 : 가맹사업자가 이행하기 곤란하거나 가맹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조항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계약갱신과정에서 종전의 거래조건 또는 가맹사업자에게 거래조건보다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는 행위”
- 라목 : “경영의 간섭 :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인과 가맹점을 같이 운영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문제점

- 프로모션 종료 이후 가맹점의 배민 의존도가 심화되어 중개수수료가 오르는 상황에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개월 동안의 혜택과 다른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비교했을 때, 시간이 흐를수록 가맹사업자가 비용을 더 많이 지출해야하는 상황에 처할 것.
- 배민온리 계약에따라 ▲가맹점주가 타 플랫폼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 ▲계약 이후 중개수수료가 올랐을 때에 따른 대처 비용, ▲계약 이후 타 배달 플랫폼 전체를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에 따른 불이익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3) 가맹사업법 제12조의 제4(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 위반 행위

- 제3항 :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기간 중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가맹점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의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 문제점
- 처갓집양념치킨 내 행사를 참여하는 가맹점사업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심화될 수 있음. 인근 지역에 있는 두 매장 중 할인행사에 참여한 가맹점만 주문하도록 유도하여, 실질적으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가맹점을 설치하는 결과를 가져옴.